

질량 및 관련량 분야 교정지침

1. 적용범위

본 지침은 대용량으로서 10 t을 초과한 대형저울(전기식지시저울,판수동저울/플랫트 폼 저울등)및 자동호퍼저울 등 대형분동을 사용하여 교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현장교정에서 교정품질에 대한 유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지침서에 추가로 적용한다.

2. 정의

- 2.1 교정용분동 : 국가측정표준기관으로부터 소급성이 확보된 분동
- 2.2 가분동 : 교정용분동과 함께 전기식지시저울등 또는 자동호퍼저울의 교정에 사용하는 대체물로 사용 중 변동이 없으며 온도, 습도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

3. 교정용분동의 확보

- 3.1 교정용분동은 인정범위에 적합하게 교정할 수 있는 만큼의 분동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. 다만,가분동을 사용하여 교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 인정범위의 1/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3.2 가분동은 합리적이고 재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.
- 3.3 교정용분동은 임대차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4. 교정 수행 및 증거자료의 보관

- 4.1 가분동 사용은 전지식지시저울등은 1회,자동호퍼저울은 3회까지만 허용한다.
- 4.2 교정기관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보조직원은 교정기관 소속의 자격있는 직원의 감독하에 수행되지 않으면, 인정된 교정업무를 보조할 수 없다.
- 4.2 고용되지 않은 보조직원을 활용할 경우, 그 직원의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4년 동안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. (보조직원의 인적사항 및 임금지급명세서등)
- 4.3 현장교정을 위해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된 차량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4년 동안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.
(교정현장에서의 임차사용 차량사진, 임차비 지급영수증등)
- 4.4 현장교정에서 실제 사용된 교정용분동의 수량과 가분동을 사용한 교정수행 과정이 연월일로 확인가능한 사진등으로 찍어 4년간 보관한다.
- 4.5 국가교정기관으로서 수행한 교정활동이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록(교정성적서,교정결과를 입증가능한 RAW DATA등)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